

양축농민과 세금(Ⅲ)

〈지난 호 73쪽에 이어〉

제4절 10년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 면 대 상

양축농민(축산법인 포함)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정 명 근 교수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2.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의 범위

○ 구 목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소득 세 확정신고를 볼이행하고 이에 따른 정부조사 결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목장을 소유하고 경영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에 포함한다.

○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폐업한 후 전업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는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5〉 목장의 시설기준 면세범위

사 · 업 별	사육, 성축두수	면 세 범 위
한우, 육용우사육사업	20두 이상	두당 1,150 제곱미터
육우사육사업	20두 이상	두당 2,300 제곱미터
양, 사슴사육사업	200두 이상	두당 230 제곱미터
돼지사육사업	100두 이상	두당 13 제곱미터
토끼 사육사업	500수 이상	수당 3 제곱미터
가금 사육사업	1,000수 이상	수당 3 제곱미터

3. 감 면 신 청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함으로써 구목장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감면신청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4. 사후 관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목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감면세액등의 추징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감면요건에 따라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목장 사업개시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목장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4)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이 배제된다.

당해 목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목장을 처분하는 경우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제4장 양축농민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

제1절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내는 상속세

1. 상속세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 유증 등 원인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기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3.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일반인 : 2억원
- 가업상속인 : 3억원
- 영농, 양축, 영림상속인 : 4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최소한 5억(30억 한도)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20세까지의 잔여년수
- 연로자공제 : 3천만원
- 장애자공제 : 500만원 75세까지의 잔여년수

○ 초기상속공제(상속세법 제11조의3)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43,500제곱미터(15ha)이내의 초기에 해당하는 재산
- 가액(1억원을 한도로 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직접 축산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상속 개시후 공제한 재산가액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추징당함. 단, 토지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함.

4. 상속세율

〈표6〉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억원초과	18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제2절 부모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내는 증여세

1. 증여세

증여세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2. 증여의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그 대상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가.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특수관계있는 사람끼리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채무를 면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

라.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마.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4. 증여재산공제

가. 배우자공제 : 5억원(5년단위로 계산하며 30억을 한도로 함)

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 5년간 3,000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만원.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500만원(5년간)

5. 증여세 면제

가.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98. 12. 31까지 증여받는 것에 관하여 면제한다. 그러나 '96. 12. 30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99년부터는 본 제도가 폐지되었다.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이 농지, 초지, 산림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요건

- 규모

① 농지세과세 대상농지 : 29,000m² 이내

② 초지 : 148,500m² 이내

③ 산림지

• 보전임지중 5년 이상인 것 : 297,000m² 이내

•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것 : 990,000㎡ 이내

- 지역

④ 도시계획법상의 거주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외에 소재할 것

○ 영농자녀의 요건

자경농민이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 면제세액의 추징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면제 신청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의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

6. 증여세율

〈표7〉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0%
50억원 초과	18억4천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7.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 받게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증여재산 신고서

○ 증여세 신고납부계산서

○ 기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등 재산평가 관련 서류

8. 증여세 계산사례

○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 친족공제 : 1,500만원

- 과세표준 : 1억원-1,500만원 = 8,5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므로, 8,500만원 10% = 850만원

- 납부할세액 :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자진신고 납부시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므로 850만원-85만원 = 76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제3절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요령

1. 개요

자금출처조사란 미성년자, 부녀자 등과 같이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 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증여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재산권의 양도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등의 불로소득 이전방법으로 이용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을 누락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자금출처조사라고 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 가정부, 농어민 등과 같이 그 소득원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곤란하거나, 봉급생활자 등이 취득자금의 일부분에 대해 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영세납세자가 주택 등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이,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스스로 그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자금출처 조사제외 대상

국세청에서는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득부동산 규모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보다 적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고 있다.

- ①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구별없음)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 ②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구별없음)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 ③ 40세 이상의 세대주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 ④ 30세 이상의 세대주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 ⑤ 30세 미만인 사람(남녀 구별없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 ⑥ 농지세과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9천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한 때 등

3. 자금출처 조사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취득 등기후 6~7개월 사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취득

<표8> 자금출처 조사기준

취득자		취득금액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40세 이상	4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세 이상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비세대주	40세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30세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농지를 과세받고 있는 사람		9천평 이상의 농지	

자금출처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세무서에 내면 된다.

그런데 사전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최근 3년간 소득상황과 최근 1년간의 자산양도 취득명세서를 같이 전신출력하여, 재산을 스스로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취득자가 연소자나 부녀자일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사전 안내문을 해당 납세자에게 직접 보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4. 질문에 대한 회신 요령

사전 안내문을 받으면, 그 안내문에 표시된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를 안내문 뒷면의 질문 및 회신내용 난에 기입하고, 다음의 증빙서류와 함께 사전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 또는 납세영수증 사본

○ 용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등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입증 금액이 25세 이하는 취득자금의 90% 이상, 26세 이상은 80% 이상이면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취득자가 사전 안내문을 받고도 회신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안내서를 다시 보내게 되며, 추가 안내서를 받고도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자금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증여세 과세 사전 안내문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 안내문에 대해서조차도 납세자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 임의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제6장 농·축산물과 부가가치세

제1절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공급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잔액, 다시 말해서 부가가치(마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의 면제란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행 면세제도하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취득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도 환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당해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3.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축산물 등의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가동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유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 및 분유 포함) 생선류, 폐류, 해조류, 소금 등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

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모든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2절 농업 및 축산용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영세율의 의의

영세율제도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을 원칙적으로 0으로 하여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때 납부한 매입세액을 당해 사업자에게 전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당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하여 주는 완전 면세제도를 말한다.

영세율 제도에서의 환급(또는 납부)세액

$$\begin{aligned} &= \text{매출액} \times 0\text{의 세율} - \text{매입세액} \\ &= 0 - \text{매입세액} \\ &= \text{매입세액을 전액환급받음} \end{aligned}$$

2. 농업 및 축산기자재 구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양축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0세율을 적용하여 기자재 구입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환급시켜 주므로써 양축농민이 구입하는 기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원가를 경감시켜주고 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촌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養豚**